

품목분류
CASE 2 전동식 스쿠터

판정번호
N351832

물품 정보

용도

- 환자, 노인 및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이동 보조 수단

구조

- 백미러·전조등·경적·방향 지시등 장착
- 모델별 최대 시속 4.3~9.3마일

쟁점 HS



제 8703 호

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

제 8713 호

신체장애인용 차량

CBP 판단

- 쟁점물품은 제8713호의 신체장애인용 차량과 구별됨
 - 제8713호에 분류된 유사 차량과 비교하여 최고 속도가 약 2배에 달함
 - 백미러·경적·방향지시등 등 도로 주행에 필요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음
- 개인의 이동 능력과는 무관하게 누구나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음

미국 HS-CODE 결정

8703.90
그 밖의 차량

신체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차량으로 볼 수 없음

